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719
----------	------

2025년 6월 20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5월 23일, 우형찬 의원
2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3. 상정일자 :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
(2025년 6월 20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우형찬 의원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을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, 유치원도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켜 조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“학교”의 정의에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함.(안 제2조제1호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719호로 발의되어 2025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에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포함시켜 서울시 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동등한 안전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·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.
- 조례 제정 이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,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¹⁾ 계기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학교안전법」²⁾) 및 동 조례³⁾가 개정되어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

1) '체험학습 사망사고' 담임 유죄...주의의무 위반 과실 형사책임(연합뉴스TV, 2025.2.11.)

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[2024. 12. 20., 일부개정]

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.

- 그러나 「학교안전법」과는 달리, 현행 조례는 ‘학교’의 정의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만 한정하고 유치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.⁴⁾

[표-1] 「학교안전법」과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」

「학교안전법」	「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<p>1. “학교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.</p> <p>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(이하 “유치원”이라 한다)</p> <p>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(이하 “초·중등학교”라 한다)</p> <p>다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“평생교육시설”이라 한다)</p> <p>라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</p>	<p>1. “학교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

제10조(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)

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의4(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[2025. 3. 7., 일부개정]

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

6.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·방법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(보조인력 배치)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(이하 “보조인력”이라 한다)을 배치할 수 있다.

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.

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)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에 유치원이 빠졌다(파이낸셜뉴스, 2025.4.11.)

- 유치원의 경우, 누리과정 등 유치원 교육과정(Ⅰ.신체운동·건강, Ⅱ.의사소통, Ⅲ.사회관계, Ⅳ.예술경험, Ⅴ.자연탐구)의 특성상 학교보다 현장체험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, 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빈도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.

[표-2] 2022~2024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⁵⁾

학년도	현장체험학습 운영			안전사고 발생		
	설립별	유치원 수	실시 유치원 수	실시횟수	사고건수	비고
2022	공립	292	166	531	4	개인부상 34건
	사립	472	401	9,046	30	
2023	공립	294	255	1,091	3	개인부상 23건
	사립	456	414	11,979	20	
2024	공립	293	278	1,293	3	개인부상 30건
	사립	441	412	12,983	27	

-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지침⁶⁾을 초·중등학교와 동일하게 유치원에도 안내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는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 제외하고 있어, 보조인력 배치 등 「학교안전법」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유치원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.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학교안전법」의 취지를 반영하고, 서울시교육청의 실제적 지도·감독 대상 기관인 유치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6864, 2025. 6. 4.).

5) '시의원 요구자료 제출(1063번)' (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-5222, 2025.6.2.)

6) 2025학년도 1일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안내(체육건강예술교육과 발행, 2025.2.21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건전한” 을 “건전한” 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“학교”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<u>건전한</u>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학교</u>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전한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“<u>학교</u>”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가. 「<u>유아교육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. 「<u>초·중등교육법</u>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